대학평의원회 회의록(2)

일시: 2026년 5월 13일(수) 11시

장소: 온라인

위원: 임태종(의장), 김광철(서기), 김유현, ~~박재영~~, 손희은, ~~신재현~~, 신현민, 오덕신, ~~어건호~~, 이규일, ~~어용우~~, ~~정구철~~, 조윤정

첫기도: 묵상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1. 개회

서기가 부재임으로 의장이 교수대표(2명), 직원대표(3명), 동문대표(1명), 조교대표(1명), 학생대표(1명) 등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의개최 성원이 됨에 따라 2026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함.

의　　장 : 금일에 회의 안건을 간략히 설명함.
- 안건 01. 직전회의록 승인
- 안건 02. 평의원회 위원 임명 및 사임
- 안건-03.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심의
- 안건-04. 2025학년도 결산서(안) 자문

2. 평의원회 위원 사임 및 임명 승인

의　　장 : 평의원회 위원 사임 및 임명에 앞서 새로 선출된 직원위원에 대해 설명함. 직원위원 김**, 류**, 신**의 임기만료에 따라 직원회에서 김**, 손**, 신**을 직원위원으로 추천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 손**, 신**이 직원위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설명함.

의　　장 : 회의 진행을 위해 김** 위원을 서기로 추천함.

위 원 들 : 동의함.

의　　장 : 김** 위원이 서기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함.

서　　기 : 평의원회 위원 사임 및 임명에 대해 제안하며 받기로 동의함.

의　　장 : 제청여부를 위원들에게 질문함.

위　원 3 : 재청함.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1 / 10

위 원 3 : 재청함.
의 장 : 평의원회 위원 사임 및 임명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서 기 : 직원위원 김**, 류**, 신** 임기만료로 사임함. 직원회에 추천을 받아 김**, 손**, 신** 직원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제안함.
의 장 : 설명에 대한 질문을 위원들에게 요청함.
위 원 들 : (질문없음)
의 장 : 의견이나 이견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위 원 들 : 승인함.

3. 직전회의록 승인

서 기 : 직전회의록 승인 제안하며 받기로 동의함.
의 장 : 제청여부를 위원들에게 질문함.
위 원 4 : 재청함.
서기(진행) : 직전회의록 결의사항을 설명함.
의 장 : 설명에 대한 질문을 위원들에게 요청함.
위 원 들 : (질문없음)
의 장 : 의견이나 이견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위 원 들 : 승인함.

4.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심의

서 기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심의를 제안하며 받기로 동의함.
의 장 : 제청여부를 위원들에게 질문함.
위 원 3 : 재청함.
의 장 : 학칙개정안 설명을 요청함.
학사지원팀장 : (붙임서류의 신구대비표로 설명을 대신함)
의 장: 설명에 대한 질문을 위원들에게 요청함.
위 원 1 : 학칙 제73조 교무위원회 위원구성에서 대학평의원대표가 제외되는 이유와 생활교육원장 외 다수의 인원이 추가되는 이유 설명을 요청함.
학사지원팀장 : 학칙 제73조 교무위원회 위원구성을 2026학년도 1학기 제위원회 위원구성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개정 요청임.
위 원 1 : 학칙에 대한 자문을 대학평의원회에서 진행하는데 교무위원회 위원구성에서 대학평의원 대표가 제외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함.
학사지원팀장 : 학칙 제73조 개정안은 2026학년도 1학기 제위원회 위원구성과 학칙상 교무위원회 위원구성을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사항임. 다만, 대학평의원회 대표 제외 여부와 추가 위원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
위 원 2 : 학칙 시행세칙 제9장(학과간 전과) 제 1조 개정 내용 중 모집정원의 100% 이내라는 문구를 사용할

간서명	
성명	김광철
서명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2 / 10

경우 변동성이 큰 모집인원을 전과 가능 범위 산정의 모수로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모집정원이 아닌 입학정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이와 함께 입학정원으로 변경할 시 입학정원의 구분을 학과(부)의 전체 입학정원으로 할지 1~4학년 각각의 입학정원으로 산정할지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그리고 전과의 전입과 전출을 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나 기준을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학사지원팀장 : 학칙 시행세칙 제9장 제1조 개정안은 전과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사항임. 다만, 모집정원과 입학정원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입학정원을 적용할 경우 학과(부) 전체 기준인지 학년별 기준인지, 전입·전출 가능 인원의 범위와 산정 방식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에서 개정안을 보완하기로 함.

위 원 3 : 해당 안건은 제안 사항이 많으므로 각 조항을 나눠서 결의하는 것을 의장에게 제안함.

의 장 : 위원3의 제안을 위원들에게 승인을 요청함.

위 원 들: 승인함.

의 장 : 위원1의 제안을 참고하여 학칙 제73조 개정 안건 승인을 표결에 부침.

위 원 들: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됨.

의 장 : 학칙 제74조 개정 안건 승인을 표결에 부침.

위 원 들: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됨.

의 장 :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5조 개정 안건 승인을 표결에 부침.

위 원 들: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됨.

의 장 : 위원2의 제안을 참고하여 학칙 시행세칙 제9장 제1조 개정 안건 승인을 표결에 부침.

위 원 들: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됨.

의 장 : 학칙 시행세칙 제10장 제2조 개정 안건 승인을 표결에 부침.

위 원 들 :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됨.

의 장 : 이상으로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심의 결과를 정리함. 학칙 제73조 개정안과 학칙 시행세칙 제9장 제1조 개정안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됨. 학칙 제74조 개정안,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5조 개정안, 학칙 시행세칙 제10장 제2조 개정안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됨. 부결된 안건은 회의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에서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요청함.

학사지원팀장 : 금일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 제73조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위원구성의 적정성과 대학평의원회 대표 포함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함. 또한 학칙 시행세칙 제9장 제1조 개정안은 전과 가능 인원 산정 기준, 입학정원 적용 범위, 전입·전출 가능 인원의 범위와 기준을 보완하여 소관 부서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함.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3 / 10

5. 2025학년도 결산서(안) 자문

서　　기 : 2025학년도 결산서(안) 자문을 제안하며 받기로 동의함

의　　장 : 제청여부를 위원들에게 질문함

위　원 3 : 재청함

의　　장 : 2025학년도 결산서(안) 설명을 요청함

재무 팀장 : 2025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관련하여 등록금회계 자금규모는 ***억원, 비등록금회계 자금규모는 ***억원이며,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내부거래 **억원을 제외한 교비회계 총자금 규모는 ***억원임. 2025학년도 자금수입 예산액은 ***억원이었으나 결산액은 ***억원으로 예산 대비 **억원 감소하였고, 전기에서 이월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억원임. 자금지출 총액은 ***억원이며, 이 중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억원을 제외한 지출성 자금은 약 ***억원임. 건축기금 적립과 관련하여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 가능한 금액은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인 **억원이며, 실제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억원임. 또한 자금지출 중 투자와기타자산지출은 예산 **억원 대비 결산 **억원으로 *억원 초과 지출되었으며, 해당 결산액은 원금보존장학기금 적립 *억원과 임의기금 적립 **억원으로 구성됨. 임의기금 적립 세부내역은 임의건축기금 **억원, 임의장학기금 *억원, 임의특정목적기금 **억원, 임의연구기금 *백만원임. 미사용차기이월금은 교비회계 전체 예산 **억원 대비 결산 **억원으로 **억원 증가하였음. 등록금회계의 미사용차기이월금은 예산 *억원, 결산 *억원으로 예산 대비 *천만원 감소하였고, 비등록금회계는 예산 **억원, 결산 **억원으로 예산 대비 **억원 증가하였음. 따라서 교비회계 전체 미사용차기이월금 증가는 비등록금회계 차기이월금 증가에 주로 기인함.

위　원 4 : 삼육대학교 비교운영계산서의 교육외 비용의 잡손실 항목에 대한 비용이 과다 지출된 내역에 대해 질문함.

재무 팀장 : 장학금 유형 지출 중 정상적인 회계과목을 정리하지 못해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함을 설명함.

위　원 4 : 비교운영계산서상 교육외비용 중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된 장학금 관련 지출은 회계과목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성격에 부합하는 회계과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개선할 것을 제안함.

재무 팀장 : 해당 제안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동의함.

의　　장 : 설명에 대한 질문을 위원들에게 요청함.

위 원 들 : (질문없음)

의　　장 : 의견이나 이견이 없으면 안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함.

위 원 들 : 승인함.

6.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요약

1) 평의원회 위원 사임 및 임명 건

○ 결정사항 : 직원위원 김**, 류**, 신의 임기만료에 따른 사임과 직원회 추천에 따른 김, 손**, 신**의 직원위원 임명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다.

○ 표결내용

• 안건 제1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결함

• 찬성(8명) / 반대(0명) / 기권(0명)

2) 직전회의록 승인 건

간서명	
성명	김광철
서명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4 / 10

○ 결정사항 : 직전회의록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다.
○ 표결내용
• 안건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결함
• 찬성(8명) / 반대(0명) / 기권(0명)

3)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심의 건
○ 결정사항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심의 건은 각 조항별로 나누어 심의·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심의 결과 학칙 제74조 개정안,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5조 개정안 및 학칙 시행세칙 제10장 제2조 개정안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다. 다만, 학칙 제73조 개정안 및 학칙 시행세칙 제9장 제1조 개정안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하다. 부결된 안건은 회의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서에서 추가 검토 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요청하기로 하다.
○ 표결내용
• 안건 제3호에 대하여 각 조항별로 다음과 같이 표결함
① 학칙 제73조 개정안
-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함
- 찬성(0명) / 반대(8명) / 기권(0명)
② 학칙 제74조 개정안
-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함
- 찬성(8명) / 반대(0명) / 기권(0명)
③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5조 개정안
-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함
- 찬성(8명) / 반대(0명) / 기권(0명)
④ 학칙 시행세칙 제9장 제1조 개정안
-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함
- 찬성(0명) / 반대(8명) / 기권(0명)
⑤ 학칙 시행세칙 제10장 제2조 개정안
- 표결 결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승인함
- 찬성(8명) / 반대(0명) / 기권(0명)

4) 2025학년도 결산서(안) 자문 건
○ 결정사항 : 2025학년도 결산서(안)에 대하여 자문하였으며, 비교운영계산서상 교육외비용 중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된 장학금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과목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성격에 부합하는 회계과목을 확인하여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다.
○ 표결내용
• 안건 제4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결함
• 찬성(8명) / 반대(0명) / 기권(0명)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5 / 10

7. 회의 종료

의 장 : 2026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종료를 선언함

끝 기 도 : 묵상

간서명	
성명	김광철
서명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6 / 10

붙임1-1. 학칙 (교무처 학사지원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73조(교무위원회) ① (생략)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교육혁신단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대학평의원회대표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교무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 (생략)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학부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3조(교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교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각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AI융합교육원장, 총장특보,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초청위원을 둘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조직, 부속시설과 부속기구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삭제〉 3. 학사 관련 규정·내규·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입학·수료·졸업에 관한 사항 5. 교원 및 교무에 관한 사항 6. 교무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3조 개정
제74조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장, 처장·실장·본부장, 국제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내부감사, 예산팀장, 총장이 지명하는 교수 1인과 직원 1인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의장이 되고 기획처장이 서기가 된다.~~ ③~⑤ (생략)	제74조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 ① 대학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삼육대학교 행정위원회는 총장(의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미래융합대학장, 창의융합대학장, 단과대학장 1인(간호대학장, 신학대학장, 약학대학장은 1년씩 교대로 참여), 대학원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육혁신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양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내부감사, 교수 1인,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제74조 개정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7 / 10

붙임1-2. 학칙 시행세칙 (교무처 학사지원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4장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 제5조 자기주도설계전공 - 학칙 제44조 ①~④ (생략) ⑤ 전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공명 2. 운영 목적 및 학습 목표 3. 이수 교과목 목록 및 학기별 계획 4. 지도교수 서명 ⑥ 전공명은 기존 학과명 및 연계전공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⑦ 자기주도전공 ~~심의위원회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 등 총7인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전공의 신설,변경, 폐지를 포함한 전공계획서의 심의를 담당한다.~~ ⑧~⑫ (생략)	제4장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 제5조 자기주도설계전공 - 학칙 제44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전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전공명/학위명 2. 운영 목적 및 학습 목표 3. 이수 교과목 목록 및 학기별 계획 4. 지도교수 서명 ⑥ 전공명은 기존 학과명 및 연계전공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⑦ 자기주도전공의 신설, 변경, 폐지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⑧~⑫ (현행과 같음)	제5조 개정
제9장(학과간 전과) 제 1조 (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 모집정원의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 할 수 있다. 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모집정원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다.	제9장(학과간 전과) 제 1조 (전과의 정원) 전과는 전과 희망 학과(부) 모집정원의 100% 이내 범위에서 전과를 할 수 있다. 모집정원의 100%가 초과될 경우, 본교에서 취득한 전(全)학년 성적(평점평균) 상위자를 선발하며, 성적이 동점일 경우 취득 학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단,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의 전과는 모집정원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다.	제1조 개정
제10장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제2조 (계절학기) ① (생략) ② ~~(수강대상자) 계절학기 수강대상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단, 사회봉사 관련 교과목 대상자는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이론은 15시간 이상, 실험실습 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0장 학생 출결석, 계절학기, 학점은행제도, 시간제 등록 제2조 (계절학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수업기간)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하여야 한다.	제2조 개정

간서명	
성명	김광철
서명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8 / 10

④~⑤ (생략)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학점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수업료)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의 수강을 허가받은 자는 시수당 소정의 수강료를 납	
	부 칙 본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9 / 10

2026학년도 2차 대학평의원회 서명부

위 원 장	임태종	임태종
서 기	김광철	
평 의 원	김유현	
평 의 원	박재영	
평 의 원	손희은	heeny
평 의 원	신현민	신현민
평 의 원	신재현	
평 의 원	이건호	
평 의 원	오덕신	오덕신
평 의 원	이규일	
평 의 원	이용우	
평 의 원	정구철	
평 의 원	조윤정	

Modusign Document ID : 20f9c3c0-5019-11f1-8307-39d968dfe3f0 - 10 / 10